

[사 건 명] 행심 2017 - 3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2017. 7. 5~6.경 피해학생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익명으로 입장하여 ‘키스는 해봤냐, 자위는 해봤냐, 하고 싶지 않냐, 생리할 때 하고 싶지 않아?, 난 생리할 때 하고 싶던데’ 라는 문자를 남겼다. 이에 피해학생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자, 청구인은 자신을 숨기려다 결국 ‘△학년 ▽▽▽’ 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나. 피해학생은 2017. 7. 6.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담임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 을 불러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 7. 10.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시 입장하여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했고, 피해학생이 실명을 밝히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므로 이름을 공개하였다.
- 다. 담임교사는 2017. 7. 11. 학생안전부에 신고하고,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

하였다.

라.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20.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조치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참석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절차가 위법하다.
- 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
- 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보가 전교생에게 누설되어 청구인이 대인기피증세를 보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되면 대학입학에 불리한 요소가 되는 등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부모)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전화상으로도 통보하였다. 또한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시하였다.

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의 처벌불원의사는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다.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이 ‘△학년 ▽▽ ▽’이라고 하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라. 이 사건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되더라도 대학진학을 할 수 있다.

4. 이 사건 조치의 적법 여부

가. ‘학교폭력’에 해당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긴 문자는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조치의 상당성

-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였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¹⁾,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과정 및 회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② 한편 청구인과 피해학생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하더라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청구인은 자신

1)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될 경우 청구인의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위 법률 제17조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을 숨기기 위해 다른 학생의 이름을 알려주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반영
하면,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한 이 사건 조치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